

전주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합124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11. 7 선고 2024나113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합12479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최원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변론종결 2024. 4. 3.

판결선고 2024. 5. 8.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6. 5. 10. 50,000,000원, 2016. 6. 24. 30,000,000원, 2016. 6. 29. 122,828,638원, 2016. 6. 30. 4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12,41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2,4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1)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929,000원 및 2023. 10. 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고, 2010. 11.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20.경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변제충당 결과 2010. 12. 2. 기준 52,333,816원의 잔존 원금이 있다는 이유로, 2022. 10. 12. ‘C은 원고에게 52,333,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986), 이에 대한 C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2나12117, 대법원 2024다209554,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나. C의 부동산 처분

1)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전주지방법원 D). C의 부탁에 따라 2015. 9. 17.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6.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6. 17.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각 금원지급

1) 피고는 C의 배우자인데, 2016. 5. 9. F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G 외 4필지 1932㎡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11㎡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25만 원, 임대기간 2016. 6. 30.부터 2018.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6. 7. 6. 위와 같이 임차한 부동산에서 ‘H’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2) C은 2016. 4. 26.부터 2016. 5. 6.까지 E로부터 자신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계좌에서 ① 2016. 5. 10. 위 F의 계좌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일부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② 2016. 6. 24. 피고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③ 2016. 6. 29. 및 30. E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22,828,638원 및 4,000만 원을 피고의 위 I조합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이하 ① 내지 ③ 지급행위를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피고는 자신의 위 I조합계좌에서 2016. 6. 30. F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나머지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2020. 11. 13.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2023. 7. 12.자, K단체에 대한 2023. 8.

11.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따라 2023. 8. 31. 기준 212,415,07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은 2010. 11. 30.경 발생한 것인데,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계약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인 212,41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C의 재산은닉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121,929,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피고

1)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사용한 L으로부터 모두 변제 또는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보전권리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L에 대해 가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모두 변제받았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하고 인적 담보를 제공한 C 및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하나, 현금은 유동성으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교부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재산감소를 초래하였더라도 C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행위가 아니고, 피고 역시 C의 증여가 원고를 해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그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것에 한정된 것이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하여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 중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는바, 위 판결금 채권의 원금 52,333,816원에 그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3. 8.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합산한 212,415,000원(= 52,333,816원 + 160,081,257원²), 100원 이하 버림)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C과 피고가 법률상

부부인 점, ②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시기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③ C은 E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곧바로 F 또는 피고에게 이체행위를 한 점, ④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약 50일 사이에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E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가) 관련 법리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지급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16. 5. 10.자 5,000만 원의 경우 피고가 F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C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이익이 직접 귀속되는 점, ② 2016. 6. 24.자 3,000만 원의 경우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 점, ③ 2016. 6. 20. 및 30.자 합계 162,828,638원의 경우 C이 E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잔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고, 다음 날 피고가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F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으로 지급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와 C 사이에 위 각 금전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피고가 사용하는데 대한 의사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적극적인 입증이 없으나 법률상 부부로서 C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는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3), ② C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점, ③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돈의 합계 262,828,638원(C이 2016. 4. 26.부터 5. 6.까지 E로부터 입금 받은 1억 원과 2016. 6. 29.부터 6. 30.까지 피고에게 입금하게 한 162,828,638원의 합계4)) 중 대부분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앞서 본 C과 피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던 점, 원고가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점 등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에 대한 판단5) 1)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을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선의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C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경위, 이 사건 식당의 개업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악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무자 C의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인 212,41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12,4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춘순, 판사 이태희, 판사 남윤표

별지

1) 원고는 청구취지를 ‘2016.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보면 주문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위와 같이 선택한다.

2) 52,333,816 원에 대한 2010. 12. 3. 부터 2023. 8. 31. 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피고 2023. 10. 4. 자 준비서면

4) 총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의 주장 중 위 가. 나. 항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판단한 부분은 제외한다.